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544

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:조은희·백종헌·서범수

이인선 • 고동진 • 김기현

최수진 • 박정하 • 주진우

김상욱 • 한지아 • 이달희

김용태 · 윤건영 · 박준태

곽규택 • 이만희 • 서명옥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파장이 지속되고 있음.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(SNS)에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.

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에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성범죄 콘텐츠 적극수사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. 그러나 현행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제도가사후승인제도여서,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

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함.

이에 야간 ·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,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.(안 제25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9까지를 각각 제25조의5부터 제25조의10까지로 하고,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25조의6(종전의 제25조의5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25조의4"를 "제25조의5"로 하고, 제25조의8(종전의 제25조의7)제1항 중 "제25조의6"을 "제25조의7"로 한다.

- 제25조의4(아동·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)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.
 -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.

제65조제1항제1호 중 "제25조의7"을 "제25조의8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5조의4(아동·청소년대상 디
	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
	비공개수사) ① 사법경찰관리
	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
	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
	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
	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
	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
	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.
	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
	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
	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
	<u>서의 장에게 <mark>보고하여야 하고</mark>,</u>
	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
	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
	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
	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
	<u>한다.</u>
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
	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
	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
	<u>다.</u>
제25조의4(아동·청소년대상 디	제25조의5(아동·청소년대상 디

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 위장수사)(생 략)

제25조의5(아동·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 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) 사법경찰관리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없다.

1. ~ 4. (생 략)

<u>제25조의6</u>(국가경찰위원회와 국 회의 통제) (생 략)

제25조의7(비밀준수의 의무) ①
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
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
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·집
행·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
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
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
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

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	-
위장수사) (현행 제25조의4외	ŀ
같음)	
제25조의6(아동·청소년대상 디	
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	<u>_</u>
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	!
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시	ŀ
용제한)	_
제25조의5	_
	_
	_
	_
<u>.</u>	
1. ~ 4. (현행과 같음)	
제25조의7(국가경찰위원회와 국	<u>_</u>
 회의 통제) (현행 제25조의6고	
같음)	
제25조의8(비밀준수의 의무) ①)
제25조의7	_
	_
	_
	_
	_

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----

② (생 략) <u>제25조의8</u>(면책) (생 략)

<u>제25조의9</u>(수사 지원 및 교육) (생 략)

- 제65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25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 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 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한 자
 - 2. ~ 4. (생 략)
 - ② ~ ⑤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<u>제25조의9</u> (면책) (현행 제25조의8
과 같음)
<u>제25조의10</u> (수사 지원 및 교육)
(현행 제25조의9와 같음)
제65조(벌칙) ①
1. 제25조의8
O 4 (원웨기 가O)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